

<<돌봄서비스 특화훈련(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) 환급>>

“훈련과정 수강 시 정부승인훈련비 중 **자비로 납부한 훈련비 금액 전액**”
(단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)

<환급 요건>

◎ 취·창업하는 경우

돌봄서비스 특화훈련 **수강 중 또는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* 이내에 취·창업한 사람** 중 **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**할 것

* 훈련 시작일 이전부터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**1년 이내**에 취업하면 됨

1)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·창업할 것

* 직종이 KECO 증분류 2329,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/30, 보건의료직/55, 돌봄서비스직(간병, 육아) 중 하나일 것

2) 아래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**어느 하나를 충족**할 것

① **1개월간** 소정근로시간을 **60시간 이상(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)**으로 정하고 **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**할 것

*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20시간 이상(주 5시간 이상 포함) ~ 월 60시간미만일 경우 **50% 환급**

②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**사업자등록을 하고(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) 사업을 개시**할 것 (단,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 불인정)

3) 취업한 날로부터 **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**일 것

4) 취업한 날로부터 **1년 이내에 신청**할 것

◎ 재직자인 경우

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수강 시 **재직상태였던 사람**으로서 **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**할 것

1)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**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**일 것

* 직종이 KECO 증분류 2329,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/30, 보건의료직/55, 돌봄서비스직(간병, 육아) 중 하나일 것

2) 훈련과정을 **수료**할 것

3) 훈련 수료일로부터 **1년 이내에 신청**할 것